

#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3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 23.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『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』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 바 『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』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 마련

## 2. 주요내용

- 고성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고성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(안제7조)
-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(안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없음
- 다. 규제심사 : 규제신설, 폐지 등 없음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

제3조제1항 및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“1인”을“1명”으로 “15인”을“1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2호 중 “통영소방서장”을 “고성소방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 ①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b>제2조(위원회의 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</li> <li>2.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</li> <li>3.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</li> <li>4.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·조정</li> <li>5.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</li> <li>6.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전의 심의</li> </ol>	<p><b>제2조(위원회의 기능)</b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&lt;삭제&gt;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b>제3조(위원회의 구성)</b>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부군수</li> <li>2. 통영소방서장</li> <li>3. 고성경찰서장</li> <li>4. 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</li> <li>5. 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</li> <li>6. 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</li> <li>7. KT 고성지점장</li> <li>8.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</li> </ol> <p>②(생략) ③(생략)</p>	<p><b>제3조(위원회의 구성)</b> ①-----1명 -----15명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 고성소방서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</b>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(생략) ③(생략)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<b>제7조(위원회 실무위원회)</b> ①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,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(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)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.</p>